

[별표 6]

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(제14조제3항 관련)

1. 측정대상 :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
2. 측정물질 : 다이옥신
3. 측정매체 : 배기가스, 폐수
4. 측정의 주기 및 횟수

가. 배기가스

1) 소각시설

가)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: 6개월마다 1회 이상

나)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: 12개월마다 1회 이상

다)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: 24개월마다 1회 이상

2)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

구 분	측 정 주 기
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-TEQ 이상인 배출시설(소각시설을 제외한다)	6개월 마다 1회 이상
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-TEQ 이상 25g-TEQ 미만인 배출시설(소각시설을 제외한다)	1년마다 1회 이상
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-TEQ 미만인 배출시설(소각시설을 제외한다)	2년마다 1회 이상

비고

1.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 = [다이옥신 배출계수/1-(방지시설 설계효율/100)]

× 최대 연간활동도

2. 다이옥신 배출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가.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값이 있는 경우

다이옥신 배출계수=A×B/C

A : 다이옥신 농도(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값 중 최대값)

B : 최대 일일유량(시설용량)

C : 최대 일일활동도

나.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4회 미만의 실측값이 있는 경우

업종별 다이옥신 평균배출계수를 적용

다. 최근 2년 이내 실측값이 없는 경우: 다음의 업종별 평균배출계수를 적용한다.

<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>

배출시설		배출계수 ($\mu\text{g-TEQ/톤}$)
제철 및 제강시설	소결로	0.9
	전기아크로	1.0
동 제련,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	전기아크로	1.5
	용융/용해로	1.0
	반사로, 전로, 정련로, 배소로, 전해로, 건조로, 도가니로	0.5
동 압연,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	전기아크로	1.0
	용융/용해로	25
	반사로, 전로, 정련로, 배소로, 전해로, 건조로, 도가니로	0.5
알루미늄 제련,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	용융/용해로	6.0
	반사로, 전로, 정련로, 배소로, 전해로, 건조로, 도가니로	0.5
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	용융/용해로	1.5
	반사로, 전로, 정련로, 배소로, 전해로, 건조로, 도가니로	0.5
시멘트 제조시설	소성로	0.1

3. “방지시설 설계효율”이란 해당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한다.

가. 처리효율은 해당 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.

다만, 방지시설 효율 값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먼지 제거 효율 값을 적용한다.

나. 배출시설에 2기 이상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계효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n_t = n_1 + n_2 \left(1 - \frac{n_1}{100}\right) + n_3 \left\{1 - \frac{n_1 + n_2 \left(1 - \frac{n_1}{100}\right)}{100}\right\} + \dots$$

n_t :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

$n_1, n_2, n_3, \dots$: 개별 방지시설의 설계효율

나. 폐수 부문

12개월마다 1회 이상. 다만, 이염화에틸렌·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.